

성북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

성북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문을 게재하는 등 조치하고 향후 사업추진 단계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

개 요

- 법적근거 :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
- 지정권자 : 서울특별시장
- 지구지정 경위
 - 사업지구 지정 신청 : 2015. 12. 04.
 - 사업지구 지정(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·의결) : 2015. 12. 17.
 - 사업지구 지정·고시 및 우리구 통보 : 2015. 12. 1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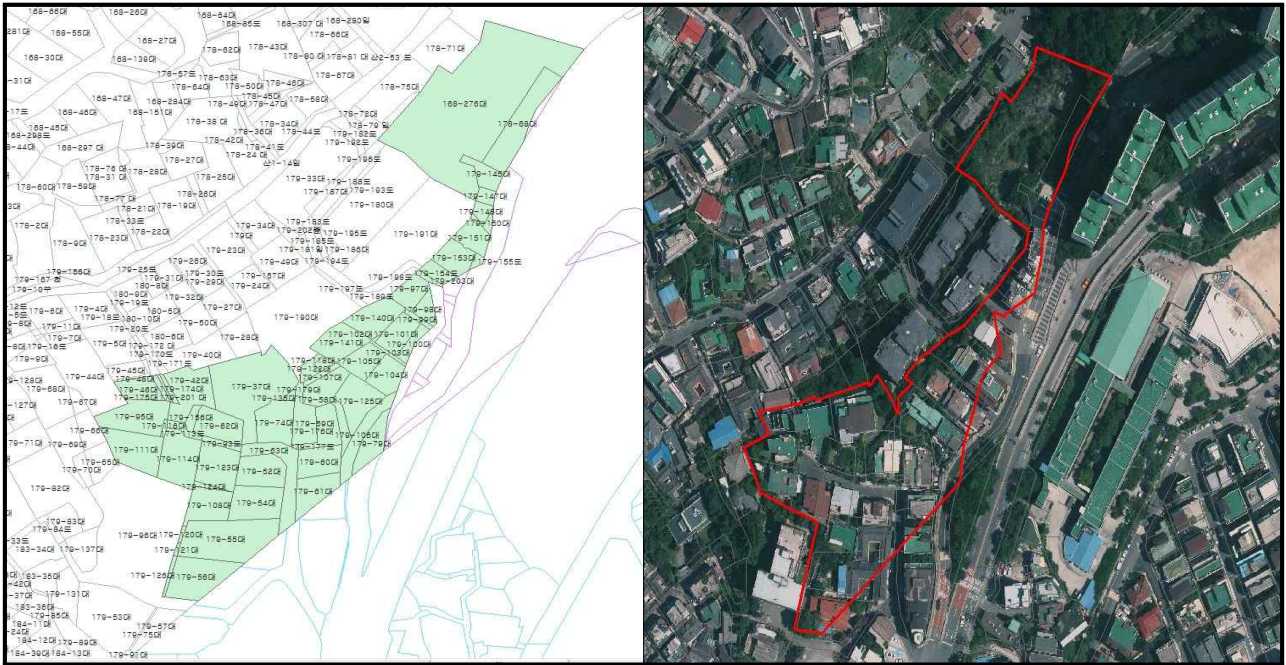
II

사업지구 지정고시

- 지 구 명 : 성북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
- 시 행 자 : 성북구청장
- 고 시 일 : 2015. 12. 24.(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409호)
- 사업지구 현황 : 성북구 성북동 168-276 일대(삼선중학교 서쪽)
- 사업지구 요약
 - 사업지구 현황

지구현황		실시계획 수립일자	사업지구 소유자수 (A)	동 의 서 청 구 현 황		사업지구 지정		소요 예산
지구명	불부합 유형			동의 (B)	비율	면적(m ²)	필지수	
성북동 지 구	도시/ 불규칙	2015.10.26	80명	55명	68.8%	11,852	64	12백만원

● 위치도(지적도 및 항공사진)



III

그간 추진현황

-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황 파악 및 일필지 조사 : 2015. 3월 ~ 6월
-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 : 2015. 6월 ~ 7월
- 토지소유자 사전 의견 청취 및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 : 2015. 7월 ~ 10월
- 주민설명회 개최 : 2015. 10. 23.
-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·공고(기간 10. 26 ~ 11. 27) : 2015. 10. 26.
-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(동의율 : 68.8%) : 2015. 10월 ~ 11월
- 사업지구 지정 신청(→ 서울특별시) : 2015. 12. 04.
-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·의결 : 2015. 12. 17.
- 사업지구 지정 통보 : 2015. 12. 18.

IV

향후 추진계획

- 사업지구 지정고시(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409호) : 2015. 12. 24.
-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, 동 주민센터에 고시 내용 게재

- 토지소유자에게 고시내용 개별 통지(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위촉 협조)
- 사업지구 대상토지 지적공부에 **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등록**
- 국비(측량비) 추가 배정 요구(**6,197천원**) : 2016. 1월 ~ 3월
 - 2015년도 국비(측량비) 확보 : 5,803천원
-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: 2016. 3월
 - 입찰공고, 평가 후 선정 및 계약 :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 -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지적소관청이 시행
 - 측량·조사 등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음
 - 대행자의 범위 : 한국국토정보공사,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
-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: 2016년 3월 ~ 6월
- 경계결정 및 확정 : 2016년 6월 ~ 10월
- 조정금 산정 및 통지 : 2016년 11월
-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정리, 등기촉탁 : 2016년 12월

붙임 : 1.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문 1부.
 2.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도 1부. 끝.